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15-18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10월 7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지역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광진구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임무 및 조직구성 운영 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나. 방범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- 다. 방범대 지도 및 감독 (안 제8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5년 10월 13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장, 전화 : 450-1446, FAX : 454-0438, E-mail : ziglo@gwangji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.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별 첨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1부. 끝.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 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”(이하 “자율방범대”라 한다)란 각 동에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조직 및 구성) 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율방범대는 대장·부대장·총무 및 대원(이하 “자율방범대원”이라 한다)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임무)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취약지역 범죄 예방·순찰 및 범죄 신고
2. 청소년 선도 및 미아·기아·가출인 보호 활동
3.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
4.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
5. 그 밖에 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등

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,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5조(활동범위) 각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한다. 다만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.

제6조(신고 등) ① 자율방범대를 신설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율방범대 설립·등록 신고서(이하 “신고서”라 한다)를 해당 동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·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자율방범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경비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방법초소의 설치
2. 복장 및 장비 구입비
3.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
4. 상해보험 가입비
5.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경비
6.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,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, 제8조에 따른 지도·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
2.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3.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4.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지도 및 감독)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.
② 구청장은 방법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·점검하여야 한다.

제9조(교육) 구청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법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법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포상) 구청장은 방법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법대 및 모범대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광진구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율방법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법대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